제1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0. 1. 15.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0년 1월 15일

2. 장　　소　 :　금융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은　성　수　위원장

이　성　호　위　원

최　　훈　위　원

윤　석　헌　위　원

윤　면　식　위　원

위　성　백　위　원

심　　영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19년도 제22차 금융위 회의록, 2020년도 제1차 임시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1차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2019년도 제22차 금융위 회의록, 2020년도 제1차 임시 금융위 회의록과 2020년도 제1차 금융위 안건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를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2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전세금반환보증'의 경우 민간금융회사들과의 경쟁 면에서 갈등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check)해 보셨는지?

○ (보고자) 다른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이하 'SGI')와 국토부 산하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동 상품을

취급하고 있음.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가 취급하게 될 때는 주금공에서 전세대출보증을 받아간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급할 예정임. 따라서 지금까지 이 상품을 취급하기 전에는 HUG나 SGI상품을 이용해 왔기 때문에 그쪽 입장에서는 고객을 빼앗기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하지만 이용자편의 측면에서 보면 두 기관의 다른 보증상품을 가입해야 되는 불편이 해소되고, 또 각각 보증료를 내는 것보다 보증료 자체를 낮출 수 있음. 그렇게 낮출 수 있는 이유는 주금공이 전세대출보증을 공급하면서 반환보증을 공급하게 되면 결국 집주인이 부도가 나더라도 반환보증금으로 공급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전세대출보증 자체의 대위변제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음. 그래서 같은 기관에서 할 때 약 30%(10bp)정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생김.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3호 **『에스케이증권㈜의 트리니티자산운용㈜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호『**디비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5호『**엔에이치아문디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6호『**하나유비에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7호『**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8호『**홍국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9호『**우리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10호『**플러스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11호『**알파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12호『**에이치디씨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13호『**유진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14호『**키움투자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15호『**현대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16호『**한국투자신탁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17호『**케이비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18호『**파인아시아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19호『**디지비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0호『**비엔케이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1호『**현대인베스트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2호『**케이티비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제4호부터 제22호까지의 안건과 관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함. 편입금지 자산 관련 집합투자규약만을 위반한 펀드의 경우 대상 회사들이 금융위 민원 회신문을 부주의하게 확대해석하여 위반행위가 발생한 점, 다수의 자산운용사가 장기간 해당 자산을 편입해왔음에도 금번에 최초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 산정 시 위반동기를 '중'에서 '하'로 변경하여 위반펀드별 부과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수정의결함.

○ 각각 수정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수정* 의결함** (단, 제11호는 원안 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23호 **『한국자산신탁㈜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4호 **『에셋원자산운용㈜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5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6호『**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7호『**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이번 보험업감독규정이 전반적으로 모집수수료 체계에 대한 개편으로 굉장히 진일보한 방법이고 이 과정에서 GA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함. 부칙 시행이 대면채널은 2021년, 비대면채널은 2022년으로 앞으로도 1년~2년 정도 있게 될 것 같음.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승환계약, 모집경쟁 같은 것들이 벌어질 개연성도 있음. 상품을 밀어낸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됨. 모집수수료 시행기일이 길더라도 향후 1~2년간 GA들의 상품 판매 등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 (위원) 부칙 시행일을 2021년, 2022년으로 기간을 넓게 잡은 이유는?

○ (보고자) 현재 모집수수료 체계, 회사와 GA가 계약이 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면 GA들이 1차년도에 소속 설계사들한테 주고 있었던 수당 체계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에 시간을 좀 주자는 측면과 실제로 그런 지급기준들을 바꾸는 것에는 시한이 조금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1년 유예를 한 것임.

○ (보고자) 사업비 수수료 체계의 개선은 보험 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고 볼 수 있음. 미국, 호주,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1년에 최대(maximum) 얼마 이상은 못쓰도록 만든다든지 1차년, 2차년, 3차년으로 하는 부분들이 과거의 어떤 불완전 판매라든지 부실계약이 많기 때문에 새롭게 하는 부분이었음. 그런 부분들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절차적으로 했던 부분들임.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28호**『신한생명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29호**『흥국생명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30호**『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1호**『디지비생명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32호**『케이디비생명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33호**『메트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34호『**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35호『**흥국생명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36호『**현대해상화재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37호『**한화손해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38호『**삼성화재해상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39호『**롯데손해보험㈜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손해보험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보험금을 부당하게 과소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들에게 추가적인 보험금 지급이 이루어지는지?

○ (보고자) 그러함. 지금 적발된 것이 1,785건인데, 현재 수익자와 연락되지 않은 26건을 제외하고 모두 지연이자를 포함해서 전액 다 지급이 되었음.

○ (위원) 보험료 납입면제를 누락해서 보험료를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하는데 돌려주는지?

○ (보고자) 그러함. 이 또한 모두 다 지급되었음.

○ (위원) 제28호 안건부터 제30호까지의 안건을 보면 통신판매(TM)모집시 중요사항의 설명을 누락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

해서 회사 별로 다르지만 최고 2억 6,600만 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음. 그리고 그 뒤의 생보나 손보의 경우에는 보험업법 위반 중에서도 중한 사항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위반했고, 특히 보험업계 신뢰와 관련되어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 보험계약 해지업무 부당, 보험계약 소멸시 환급금 과소지급 등의 내용들임. 그런데 전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과징금 액수의 금액이 크지 않음. 이것을 보면 보험업법 체계 내에서 위반에 대한 경중이 가려지지 않고 제재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중한 위반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한 제재 특히, 신뢰와 관련되는 제재들은 단순히 건수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경한 것들이 오히려 과도하게 금액이 높게 책정된 현상이 있을 수 있음. 그런 부분이 좀 조화되어서 중한 제재에 대해서는 그에 적합한 합리적인 제재수준이 결정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모색해야 될 것임.

○ (보고자) 현행 보험업법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금액이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그래서 보험금 부당 과소지급과 같은 중한 제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해당 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다 보니 금액에 있어서 실제로 다른 사안들과의 경중이 차별화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그래서 보험업법 개정을 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해서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0호『**KB캐피탈㈜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1호『**현대카드㈜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42호『**현대캐피탈㈜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제43호『**현대커머셜㈜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일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4호『**농협자산관리회사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평가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45호『**에스엠신용정보㈜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신용정보평가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1호 **『2020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경영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임. 이로 인해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관련해서 보면 현장검사 횟수가 부족하여 금융회사 경영상황을 적기에 파악하기 어려워 자료 분석을 통한 금융회사 현황 파악에 주력하고 있음. 금융회사의 경영 현황을 제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람. 두 번째는 예보는 그간 금융회사 리스크 감시 및 부실정리 등과 관련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고, 작년에 합의한 대로 예보 검사인력이 적극적으로 금감원 검사를 지원할 것이니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람. 그리고 공동검사 관련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어 은행 1개, 생명보험 1개 이렇게 업권별로 1개만 공동검사를 가기로 되어 있는데 조금씩 늘려주시는 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음. 그리고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한 예보의 조사가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려고 하니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함.

○ (위원) 최근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라는 국내외 금융상황이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수익추구성향을 높이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시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함. 그런 측면에서 특히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은행에 대해서 더 많은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데 은행보다는 비은행이 항상 더 취약하기 때문에 비은행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비은행 관련된 정보공유를 많이 해주셨으면 함. 그리고 저희 한은과 예보가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나가는데 지난해에도 유관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금년에도 변함없이 한은, 예보 등과 같은 공동검사기관에 대해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림.

○ (보고자) 우선 정보공유 확대와 관련해서는 원장님께서도 유관기관 간에 정보는 최대한 확대하라고 하셔서 작년도에도 과거보다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업무보고서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받는 것 외에도 수시보고서의 일부, 그다음에 내부보고서 중에서도 일부는 공유를 확대했음. 다만, 좀 민감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원내에서도 언론에 유출되거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일부 공유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능한 많이 공유하도록 노력하겠음. 그리고 공동검사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수검부담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일방적으로 많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음. 다만, 공동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되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회사 중심으로 예보 인력을 추가로 따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을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보가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해서 좀 더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음. 그리고 부실우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특히 저축은행 중심으로는 단독검사도 가능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몇 개 실시해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재작년보다 4개 회사를 더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아울러 비은행 부분의 자료공유,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공동워크샵을 예전에는 1박2일로 한 번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일로 2번 하도록 하겠음. 작년에도 과거보다는 각 기관의 검사역들과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으로 많이 개선된 것 같음. 올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음.

○ (위원) 저금리 상태로 은행이나 금융기관들이 일탈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소비자보호,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법령을 위반한 금융회사를 엄격히 제재하는 것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함. 그러나 금융회사가 처음부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을 충실히 하는 것 또한 감독당국의 중요한 역할임. 우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잘 갖춰져 있었더라면 법령 위반사례가 잘 생기지 않을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보호라는 가치도 구현할 수 있을 것임. 금감원은 올해 검사를 실시하면서 내부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람. 금융회사별로 내부통제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받고 개선실적에 대해 점검하는 것도 중요함. 검사과정에서 수집된 사례 등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관련 주요 미흡사항을 정

리하여 금융업권별 협회를 통해 안내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과거 5년간 어떤 분야에서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했는지 살펴보고,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준법감시인 현장간담회의 확대 등 사전예방활동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임. 특히, 법령이나 규정 미숙지 등으로 인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현장에서 현지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위원) 저금리 하에서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띄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함. 따라서 감독 기능을 강화 내지 확충해 나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금년에는 금감원 전체 차원에서 상시감시 쪽에 주력해서 시스템도 만들고 실질적으로 그런 활동이 실효성 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함. 한은과 예보와의 협력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특히 한은은 매크로 쪽을 보고 있고 예보는 부실금융기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정의하기도 어렵고 약간 경계(boundary)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인력이 부족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보충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항상 문제를 미리미리 파악해서 제재를 하지,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부분은 생각처럼 쉬운 문제는 아님. 인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인원은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금융위 쪽에 당연히 신청을 할 것이고, 또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허용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다음에 소통의 문제, 국과 국 간의 문제, 권역 간의 문제 이런 것도 사실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 DLF 문제에서는 은행권과 자본시장 쪽으로 유기적으로 검사가 공동으로 진행이 잘 됐음. 오히려 칭찬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그런 사실이 눈에 띄다 보니 그것이 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의 노력은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모두에 말씀드린 상시적인 감시체제를 제대로 개념(concept)부터 잘 잡고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보강을 하면서 유관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음.

○ (보고자) 내부통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감사협의제라고 해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사항은 종합검사 평가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점검결과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제도개선도 같이 추진하고 금감원장님께도 보고 드렸음. 그래서 올해는 이것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음. 그리고 위규사항에 대해 수집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 준법감시인과 감사인을 통해서 하고 있어서 일선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사국과 회의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그리고 최근 5년간 보험금지급 등 주요위반사례도 자료작성해서 보고토록 하겠음. 그리고 현지조치 확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과거에는 전체 지적건수의 3분의 1 정도가 현지조치, 3분의 1 정도가 개선, 경영유의, 3분의 1 정도가 문책 건의였는데, 작년 하반기 이후 이것을 확대해서 현재는 2분의 1정도까지로 확대 됐음. 일부 부서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지조치 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최종검사 나가기 전까지는 현지조치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서 더욱더 늘어나도록 하겠음. 다만, 좀 어려운 것들은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현지조치는 못하고 100만원이라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것은 금융위원회에서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금융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음. 그 다음에 금감원 검사국간의 소통 문제는 사실 과거에는 검사국은 검사결과가 처리될 때까지는 검사국간 장벽이 상당히 높았음. 감독국은 그나마 유기적으로 운영됐는데 최근에 저희가 부원장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특히 이슈(issue)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총괄국을 중심으로 각 검사국 간, 적어도 이슈(issue)사항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는 검사국 경계 없이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대응을 하고 있음. 검사국 간 협업이 안 된다는 것은 과거의 사례인 것 같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2호 **『금융투자업 인가 등의 심사 진행상황 중간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함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0년도 금융위원회 제1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5시 33분 폐회)